

명예총장규정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본 대학 초대학장으로 대학 창립에 온 생애와 모든 재산을 다 바쳐 오
 늘의 본 대학을 이룩한 공로를 기려 평생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추대 및 위촉절차) 명예총장의 추대는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조 (복무) 명예총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그 전공분야에 관한 특별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다.

제4조 (해임 및 강의 정지) 명예총장이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총장
 이 그 직을 해임할 수 있으며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정지할 수 있다.

제5조 (연구비 또는 특별수당) ① 명예총장에 대하여는 특별 연구비와 생활비를 특별수당으로
 지급한다.

② 전항의 연구비와 특별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